

www.nipa.kr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www.nipa.kr

CONTENTS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6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10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3
1. 평가 기준	14
2. 평가 방법	16
3. 평가 시기 및 절차	18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23
1. 평가단계 및 활동	24
2. 단계별 세부 내용	26
1단계. 기본정보	26
2단계. 운영계획	29
3단계.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31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33
5단계. 종합의견	35
붙임	37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38
2.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41
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43
부록	47
질의 및 응답(Q&A)	48

개정이력



순번	개정년월	개정기관	개정사유	개정내용
1	2016.04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최초 작성	
2	2018.08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면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면 수정
3	2021.02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일부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분 수정

핵심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핵심사항 정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을 권고합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담당자는 직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이하“검토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사업은 외부전문가 활용을 추천합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 제공, 검토결과서 작성, 헬프데스크(02-2188-2418)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가 미첨부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예산편성, 발주, 그 외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 우려될 때 등 총 3가지 경우에 수행합니다.
- *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 예산편성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였어도 발주단계에서 사업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 발주단계에서 작성하신 검토결과서는 제안요청서(RFP) 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www.nipa.kr

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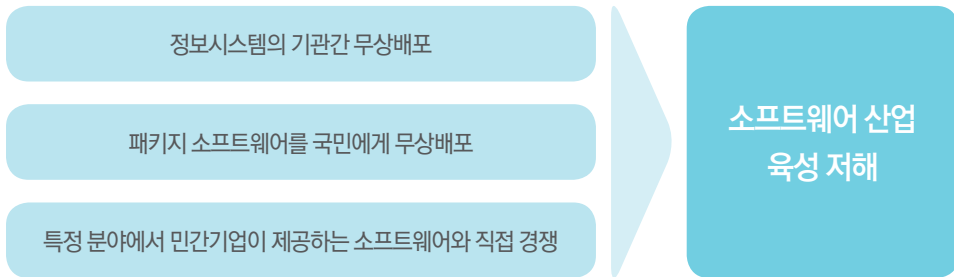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개요】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도입 배경】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위축



정보시스템의 기관간 무상배포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국민에게 무상배포

특정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직접 경쟁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저해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법적 근거 (붙임 1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재평가 제외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제4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대상사업】

•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사업을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기술적 의미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디지털 콘텐츠제작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추진경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도입방안 검토(『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14.7월)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반영, '15.5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근거 마련(『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6.6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 실시 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 신설, '18.2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절차 마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2 신설, '18.7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의2 신설, '18.8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법, '20.12월 시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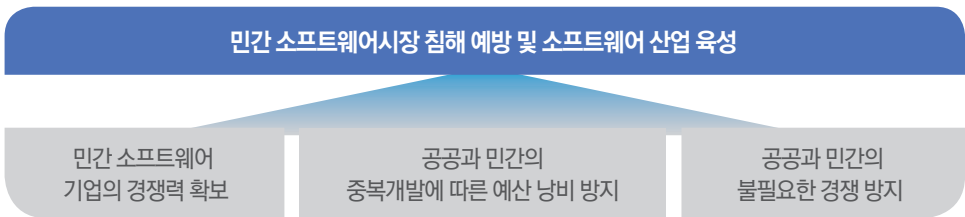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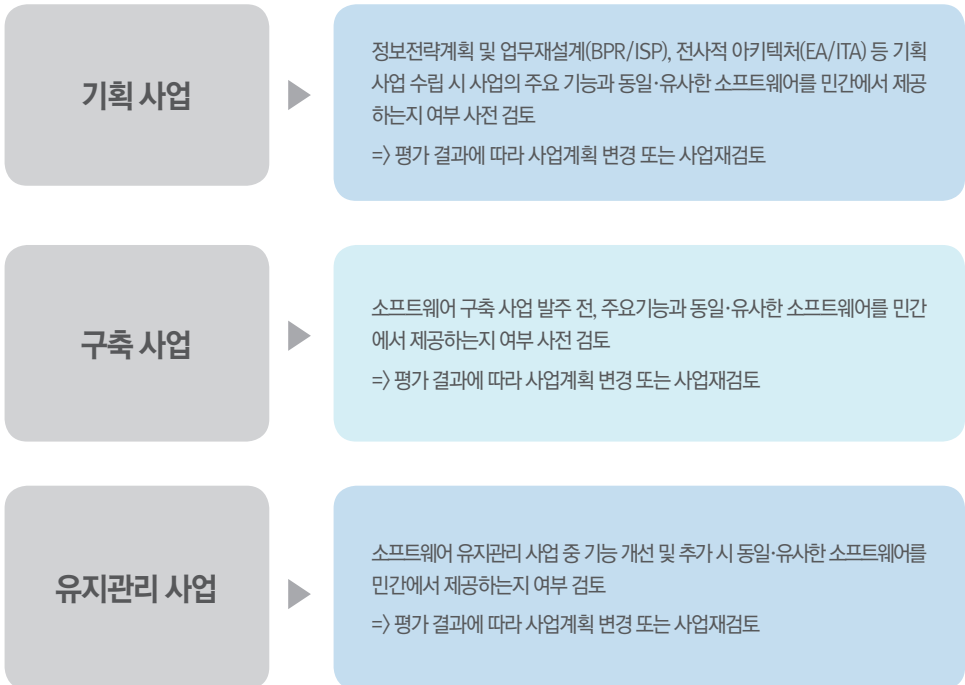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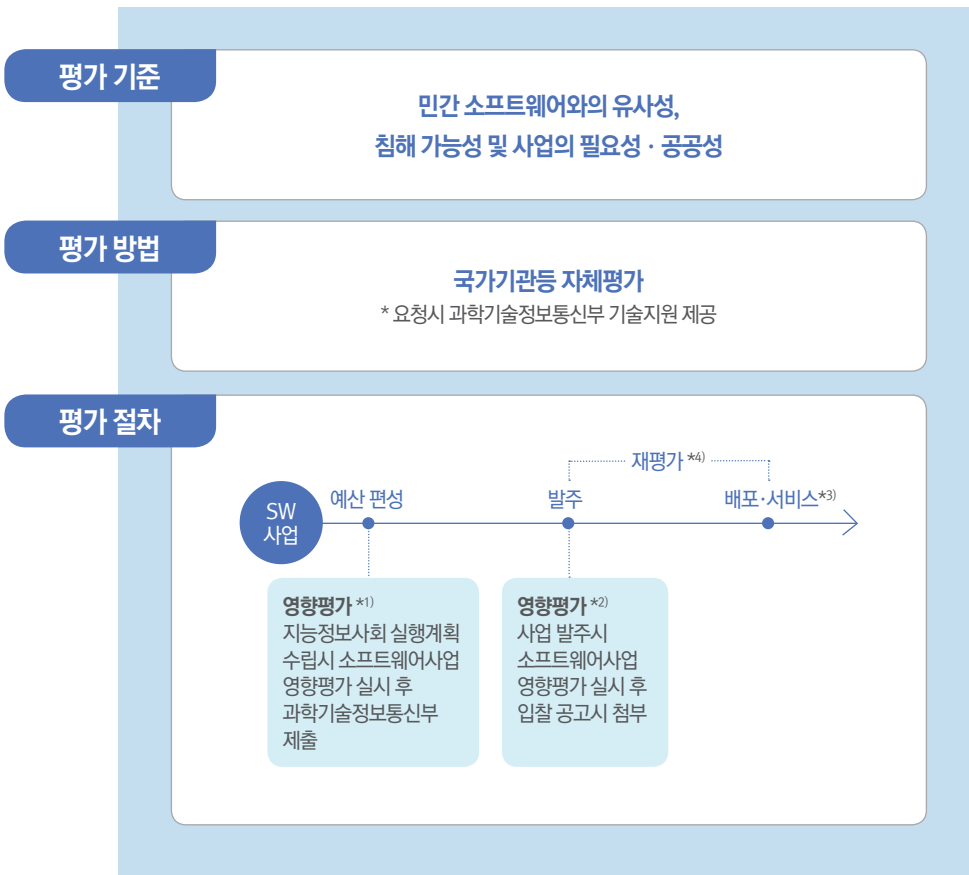


【 사업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본 체계 】



-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 및 기재부에 조정 요청 → 기획재정부는 조정요청 의견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
-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사전규격과 (본)공고에 첨부하여 공개
- 3) 1), 2) 외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기관등이 재평가한 영향평가 결과서 또는 재평가 제외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www.nipa.kr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 평가 기준
2. 평가 방법
3. 평가 시기 및 절차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투가능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투가능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공공성
 - 민간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공공성을 기재
 - (사례) 사업 필요성·공공성이 높은 경우
 - (주요 정책사업 등) 일자리창출, 00페이 등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등 필요성·공공성이 높은 사업
 - (국가안보 등) 국방사업, 외교사업, 국가기밀, 재난대비(국가위기관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한 사업
 - (사례) 사업 필요성·공공성이 낮은 경우
 - (무상배포) 00설계프로그램 무상 배포, 메신저 SW 무상배포 등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민간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투하는 사업

1. 평가 기준

【평가결과】

구 분		내 용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어 사업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민간시장 침해 최소화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어 민간시장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 추진
	사업재검토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아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급 판정

평가기준	평가등급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민간시장침해 최소화	사업재검토
민간 동일·유사 소프트웨어 없음		○	-	
민간 동일·유사 소프트웨어 있음	사업 필요성·공공성 높음	-	○	-
	사업 필요성·공공성 낮음	-	-	○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2.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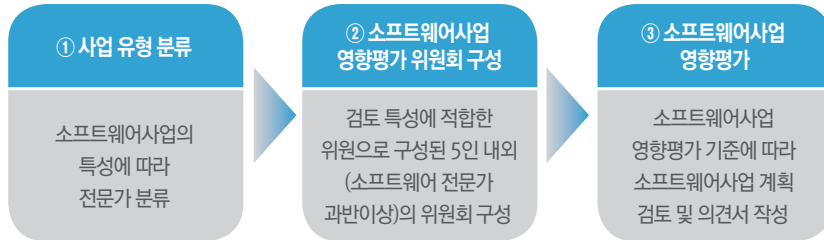
- (자체평가) 국가기관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
 -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전문가 포함)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가능
 - (기술지원)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 제공*, 평가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가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수당 지침(운영요령)에 따름
- ** 평가 요청 시 민간 시장의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급 판정

■ 구성 및 역할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5인 내외의 전문가(소프트웨어 전문가 과반이상)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 의견서*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5호 서식)참고



〈위원(소프트웨어 전문가) 자격요건 예시〉

구분	자격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프트웨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해당분야 재직 중인 사람)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프트웨어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검토결과서 작성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
- 위원별 의견이 나뉘는 경우 평가 등급*은 위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동수를 이룰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인 경우 민간시장침해 최소화, 사업재검토(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지)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3. 평가 시기 및 절차

【(예산편성)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등이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점검·분석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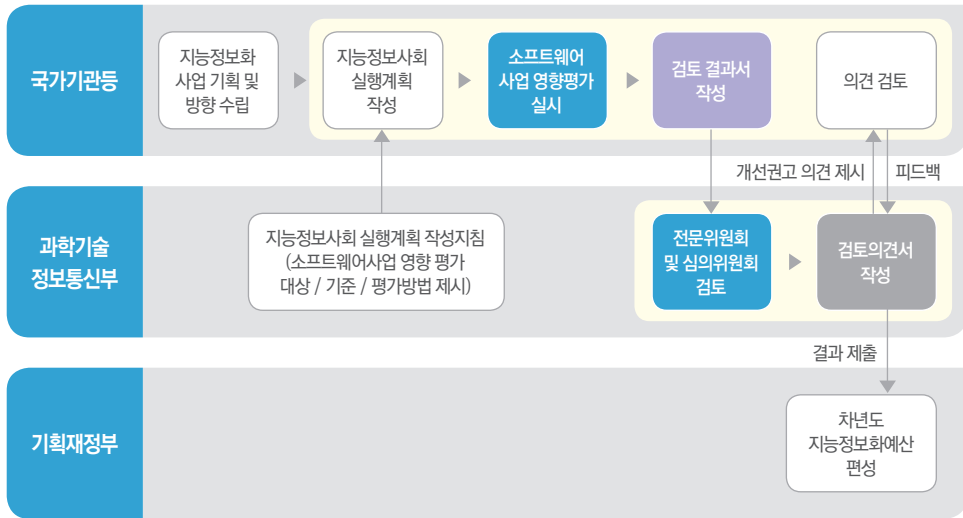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15인 내외) 및 심의위원(15인 내외)을 통해 검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근거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은 제외한다.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가 시기 및 절차



【(발주) 입찰공고】

- 국가기관등은 발주시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의 사전규격 및 본공고에 첨부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②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를 수행

- 재평가한 영향평가 결과서 또는 재평가 제외사유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할 때 법 제50조에 의해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근거)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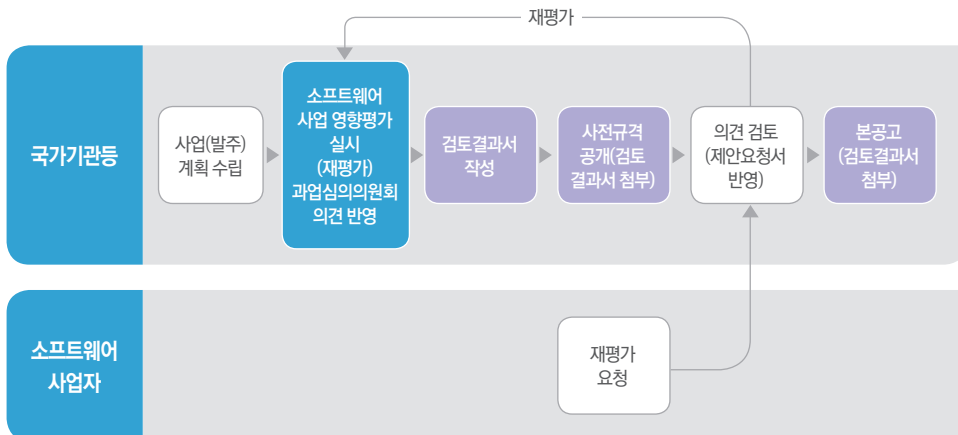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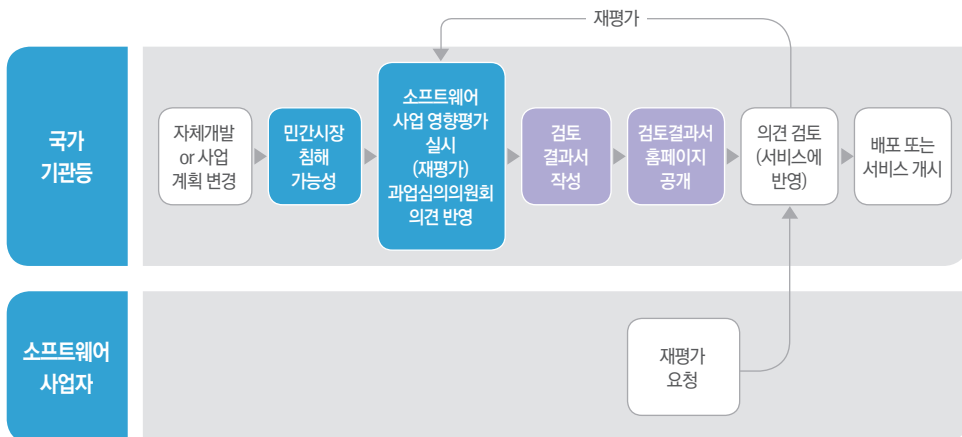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가 시기 및 절차

【(그 외 필요시)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

- 입찰공고 이전,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국가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평가 요청 사항은 위 ‘(발주) 입찰공고’시의 절차와 동일



www.nipa.kr

Ⅲ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1. 평가단계 및 활동
2. 단계별 세부 내용
3. 평가 시기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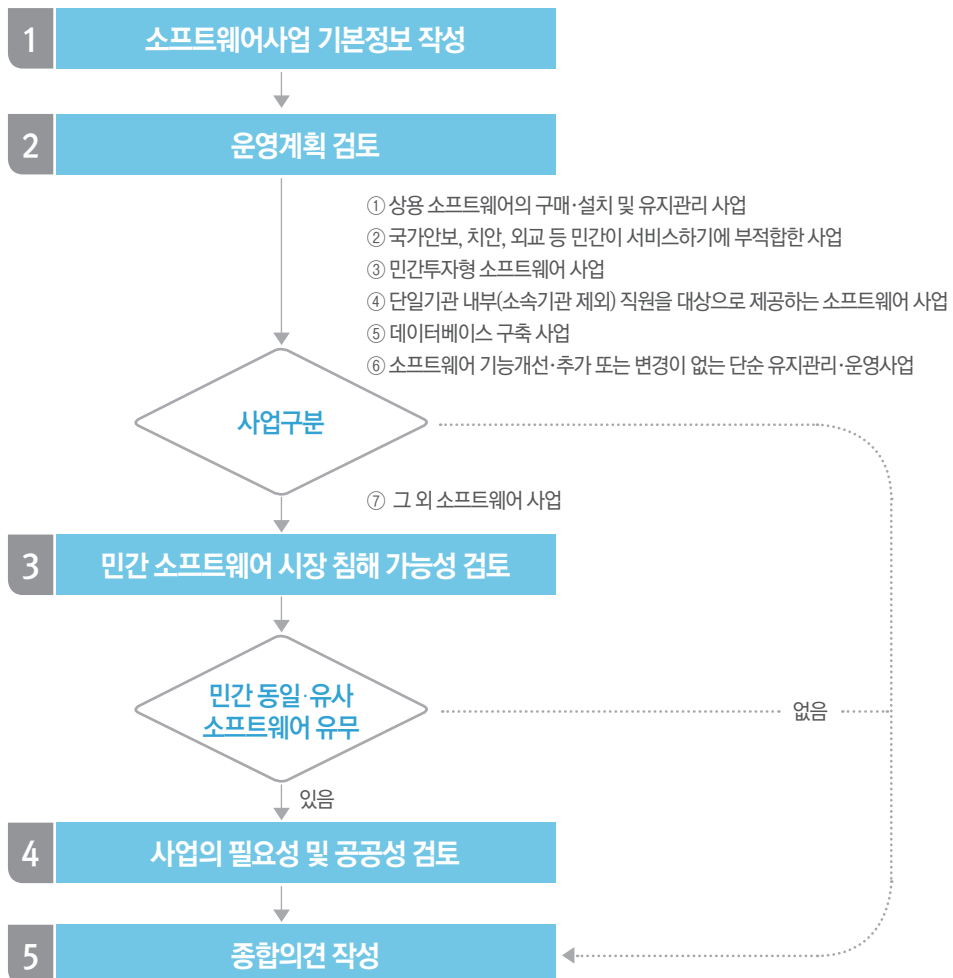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1. 평가단계 및 활동

【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단계 및 활동

【 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주요 활동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와 단계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단계	설명	참고자료
소프트웨어사업 기본정보 작성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로 사업기본정보(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영향평가 단계, 사업 구분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서 • 제안요청서
운영계획 검토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서 • 운영계획안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서 • 기능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 민간 소프트웨어 현황정보 검색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검토	주요 기능이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해 기재한다. (또는, 민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기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소프트웨어 규정 관련 법령 • 국가안보 점검 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종합의견 작성	각 단계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다. 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완화할 방안을 작성한다. 다만,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재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검토 내용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2.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기본정보

【가. 기본정보 개요】

-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이다.
- 기본정보 작성 양식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그 외 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input type="checkbox"/>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input type="checkbox"/>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나. 기본정보 작성 항목】

■ 기본정보 작성은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작성한다.

• 사업명

-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을 작성한다. 예산 편성 또는 발주단계에서는 추진 사업명으로 입력한다.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제공 시점에는 대상 시스템명이 확정되면 해당 명칭으로 작성한다.

• 영향평가 단계

- 영향평가 실시 시점은 예산편성 단계, 사업발주 단계 등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계	설 명
예산 편성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사업인 경우 선택한다.
사업 발주	예산 확보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주 단계인 경우 선택한다.
그 외 필요시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로 민간SW시장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한다.
재평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선택한다.

• 주요사업 내용

- 검토 대상 사업의 성격과 제공 기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한다.

• 사업기간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사업기간을 입력한다.

• 사업구분

- 사업구분은 기본정보 입력 이후 민간침해여부, 공공성 및 필요성 검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대상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 ①~⑥의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검토결과서 『3단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4 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항목 작성 불필요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민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설치시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단일 기관(소속기관 제외)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용 대상과 범위가 민간시장 침해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은 ①~⑥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반드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라. 유의사항】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 정보를 작성한다.
- 주요 사업 내용의 경우 대상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구분의 경우 기본정보 및 운영계획 이후 검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2단계 운영계획

【가. 운영계획 개요】

-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는 단계이다.
- 운영계획 작성 양식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나. 운영계획 작성 항목】

- 운영계획은 사업추진 계획서, 운영 방안 등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운영 방안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운영 기관
 -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종료 후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다수 기관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택하고 예상하는 기관의 수를 입력한다.
- 사용자(복수 선택 가능)
 - 대상 시스템의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사업추진 계획서 또는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확인하여 실제 소프트웨어 제공 시 타 기관 직원, 일반 국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 예상하는 사용자 수 또는 기업 수를 작성한다.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예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000 과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상 시스템은 소속 기관인 국립전파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의 정부 과제 관리 담당자와 위탁 운영을 위해 부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타 기관의 숫자는 사업 추진 담당자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총 4개로 판단하며, 해당 기관의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작성한다.

-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종료 후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다수 기관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택하고 예상하는 기관의 수를 입력한다.
- 대상 시스템의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만약 일반 국민 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예상하는 사용자 수 또는 기업의 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운영 계획 작성 예시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10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 라. 유의사항 】

-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방안은 민간 시장 침해 여부 판단의 주요한 요소로 유사 기능이 포함된 내용을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면 심각한 민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
- 예상 기관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공동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일반 국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예상인원 또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3단계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가.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개요】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 소프트웨어 제공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양식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	
	•	

【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작성 항목】

- 동 사업의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를 작성한다.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음/없음을 선택한다.
- 있음을 선택하였을 경우 개발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기재하고,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명, 업체명, 기능을 기재한다.

【유사 소프트웨어 확인 방법】

정부기관 모바일앱(www.gov.kr/portal/mobileApp),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씨앗마켓(www.ceart.kr), 패키지SW솔루션맵(www.spir.kr), GS인증 제품정보(www.swit.or.kr), SW특허정보(www.kipo.go.kr),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윈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소프트웨어 카탈로그(www.softwarecatalog.co.kr) 등을 활용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다.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작성 예시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평가자 서비스 : 00평가	00제품(00사)의 00기능
	• 00업무서비스 : 평가지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 평가 진행	00제품(00사)의 00기능
• 00행정 서비스 : 평가 기준 및 결과 관리	00제품(00사)의 00기능	

【 라. 유의사항 】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을 작성한다.
- 민간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할 시 심각한 민간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침해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은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는다.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가.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양식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나.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항목】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는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공공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주법령에 규정된 사업**
 - 국가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기능을 규정한 해당 관련 법령을 기술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축하고자하는 서비스가 정비 모델인지 정비대상 검토 제외인지 확인한다.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방안을 작성한다.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위의 사유 외에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다.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예시 】

<p>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000 모바일 앱 서비스 재개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특보 등 재난 관련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는 현재 민간 소프트웨어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공공성 높은 기상특보 및 지진정보 등을 000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민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

【 라. 유의사항 】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하여 작성한다.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은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는다.

5단계 종합의견

【가. 종합의견 개요】

- 1단계에서 4단계의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 종합의견 작성 양식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나. 종합의견 작성 항목】

-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3단계의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없음”으로 작성한 경우에 선택한다.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3단계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으로 작성한 경우에 선택한다.
 -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방안을 작성한다.
 - ①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이 높은 경우, 민간SW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②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이 낮은 경우, 사업 내용 또는 사업 추진 방식 등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다.
 - ③ 재평가의 경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없으므로 이해당사자간 협력 방안 등 민간시장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SW 병행 사용 허용 등)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다. 종합의견 작성 예시 】

■ 민간의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구매·연계하여 사업추진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00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되, 00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 민간에 유사 소프트웨어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00 공원 앱은 유사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나 다운로드 수가 100여건에 불과하여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로, 차후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임)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높아 사업재검토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000, 000 등 민간 영역의 다양한 00지원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00분야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것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검토)

【 라. 유의사항 】

- 3단계와 4단계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택한다.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을 충실하게 작성한다.

www.nipa.kr

부
임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고시)

<p style="text-align: center;">소프트웨어 진흥법</p>	<p>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p> <p>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p>	<p>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p> <p>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라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고시)

<p>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p>	<p>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p> <p>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재평가 제외사유)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p>
<p>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p>	<p>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p>

붙임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00정보서비스 (00관리서비스 표준화)	
	영향평가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그 외 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주요 내용	00개 00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input type="checkbox"/>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input type="checkbox"/>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7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1,000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업무재설계(BPR) 및 통합 시스템 상세 설계 00 규정·지침·매뉴얼 및 업무절차 표준화 00 관리 데이터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비 	A회사(P솔루션), B회사(I솔루션) 등 00 과제관리 및 00 기능 유사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 동 법 시행령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민간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관의 규정·절차·서식 등이 상이하여 제공하기가 부적합하여 이에 00현장에 맞도록 진행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00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되, 00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00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되, 00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년 월 일 기관명 : _____			

붙임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00 구축운영	
	영향평가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그 외 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시스템 고도화 - 000 판독체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00 구축 - 빅데이터 체계 구축 - 00조사 회계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 체험형 VR 교육시스템 - 000 정보제공시스템 - 모바일 000시스템 구축 - 000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input type="checkbox"/>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input type="checkbox"/>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직원 300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2,000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000 인식도구	A사 00 인식도구 / B사 A솔루션 / C사 M솔루션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small>*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이양 계획 등</small> (기여 방안: 민간 솔루션을 구매하여 활용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000 인식도구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민간솔루션을 도입하여 민간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		
5. 종합의견			

년 월 일

기관명:

www.nipa.kr

부 록
질의 및 응답(Q&A)

부록 질의 및 응답(Q&A)

Q0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향평가 준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Q0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유지관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Q03	공공기관의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입니까?
Q0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0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Q06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있습니까?
Q0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시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입니까?
Q08	소프트웨어 공동사용 장려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Q09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Q10	공공기관이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Q11	공공기관의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잘못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Q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공시 제외 사업은 무엇인가요?
Q14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로 볼 수 있나요?
Q15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확산하는 연차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될까요?
Q16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미미하게 포함된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Q17	전산장비, 보안장비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가요?
Q18	콘텐츠 제작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가요?

부록 질의 및 응답(Q&A)

Q0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향평가 준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수행 절차, 양식, 평가 예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위치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wit.or.kr>), (홈페이지)정보센터>SW제도자료실>SW영향평가)

Q0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유지관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위탁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한하여 기능 개선 및 추가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산장비(HW, SW) 유지관리, 기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단순 인건비 기준의 운영인력 운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구성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03 공공기관의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사업 중 타기관 또는 일반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며, 제외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1항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1.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설치·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①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③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단일기관이란 독립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함

Q0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사업이 있다는 소프트웨어산업계 지적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보호·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평가하여, 민간과 공공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록 질의 및 응답(Q&A)

Q0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자체 실시 후 결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예산편성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결과서 제출
- 발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그 외 필요시 :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 재평가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재평가 요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Q06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업진흥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 제공 또는 평가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평가 요청 시 민간 시장의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결과서 작성 지원

Q0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시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입니까?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결과서 작성 시 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SW산업 파급효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08 SW공동사용 장려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공성이 높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결과물의 무상배포를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Q09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전수조사가 어렵더라도 민간서비스와 유사중복 여부를 조사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록 질의 및 응답(Q&A)

Q10 공공기관이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발주 및 이후 단계에서 검토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가 미첨부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합니다.

Q11 공공기관의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잘못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3항)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따라서 국가기관등이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평가는 아래 사유의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 국가안보·치안·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이 서비스하기 부적합한 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
 -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Q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사업 추진 가능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높음)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낮음) 사업내용이나 사업 추진 방식 등 사업 계획 재검토



다만, 재평가하는 경우 이미 사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사업 계획을 재검토 할 수 없으므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간 협력 방안 등 민간시장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공시 제외 사업은 무엇인가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질의 및 응답(Q&A)


Q14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단독발주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미 민간에 존재하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SaaS 형태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에 해당됩니다.


Q15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확산하는 연차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될까요?


 이미 구축한 시스템이라도 연차사업 개발내용 중 기능개선·추가개발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Q16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미미하게 포함된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시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권고여부를 검토합니다.

Q17 전산장비, 보안장비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가요?

 [전산장비 도입] 업무용PC·서버(Window, Linux, UNIX, Mac OS 등 운영체제 포함),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HW)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장비 도입] 방화벽/VPN, ID&P(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 침입탐지 및 예방), 통합위협 관리(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등 보안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HW)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18 콘텐츠 제작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가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예시 : 교육, 홍보, 광고 등을 위한 동영상·음성·애니메이션 제작)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작예정 또는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포함된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21년 2월 발행

발행인: 김창용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기획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형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김영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배범진, 조준범

Tel: 043.931.5431 **Fax:** 043.931.5329

- 본 가이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이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Help-desk](#) Tel : 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Help-desk : 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
URL : www.nipa.kr Tel : 043-931-5431